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의 이용행위 분석

양숙미† · 김만기† †

요 약

본 연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중 위반행위에 초점을 두고 위반행위 실태를 분석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적법한 이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국 16개 시도의 관공서, 상업시설, 공동주택, 의료시설, 문화 및 체육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50개소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위반행위는 장애인 주차가능표지 미 부착 행위와 보행 장애인 미 동반 위반행위로 나타났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의 적법한 이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과 홍보를 확대해야 하고, 주차단속에 초래되는 비용·인력·민원 등의 관리운영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위반행위 개선을 위해 위반행위 발생 후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제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 이용행위분석, 위반행위

An Analysis on the Users' behavior of the Parking Area for the handicapped

Sook-Mee Yang † · Man-Ki Kim†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zes the violate behavior the Parking Area for the handicapped and monitor the management problem, therefore presents the improvement alternatives of it. We use the field interview survey method by visiting the government office of cities of 16, commercial facility, housings, medical centers, cultural and sports facilities, express highway rest area. We visited the 50 places and interviewed the 227 violating persons. As a result, violate behavior is divided into the not attachment of sticker on parking possibility and not accompaniment with walking disabled person. We presented the improvement alternatives for the lawful usage of the parking area for the handicapped. First, We have to magnify a recognition and a advertisement about the parking area for the handicapped. Second, We have to improve a management of expense, manpower and civil complains, etc. We have to prepare the legal revision which strengthens the concrete punishment for a violate behavior improvement.

Key Words : Policy of The Parking Area for The Handicapped., Analysis of Using Behavior, Violate Behavior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교신저자)

† † 남서울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논문접수: 2011년 9월 29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1년 10월 14일

* 본 연구는 남서울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함)」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위한 접근권보장의 하나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를 구체화했다. 국제인권규약과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의 제정을 통해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0].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접근을 제약하는 사회적 장벽들이 존재한다 [1][5]. 따라서 장애인에게 물리적인 장벽제거(Barrier free)가 될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디자인(universal design)되어야 한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의 이동을 도와주는 이동도우미가 장애인의 이동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하고, 쾌적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무장애공간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교통장벽 해소를 위한 편리한 도구가 자동차이다. 장애인의 접근권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동차의 중요성과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장의 이용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8년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25,268,379명이며, 실제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는 16,794,219대로 2007년의 16,428,177대에 비하면 1년 사이에 366,042대가 증가되었다 [4]. 이와 같이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수단의 증가는 당연히 이와 관련된 주차공간의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장애인과 보행 장애인에게 휠체어와 자동차는 신체의 일부이며, 신체기능을 대신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필수시설이며, 비장애인과 겸용할 수 없는 장애인 고유의 편의시설이다 [2][7].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일반주차구역보다 폭이 넓고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가깝게 설치되어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수는 주차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대부터 수대분의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과 자동차 관련 시설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만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폭이 일반주차구역보다 넓은 것

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자가 주로 휠체어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강조한 주차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5][8][9].

그러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러한 장점은 일반차량이용자에게 악용되고 있다. 즉 일반차량이용자는 일반주차구역보다 주차공간이 넓고, 주출입구에 가깝다는 이유와 주차하는 시간이 짧다는 이유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일반차량 이용자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용은 정작 그 공간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장애인의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5].

徳田克己(2001)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조사결과에서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불편사항은 첫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33%), 둘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설치물을 세워놓은 것(11%), 셋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수의 부족(7%), 넷째, 불법주차단속의 미비(7%), 다섯째, 관리인의 미배치(5%)로 나타났다[6].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반이용에 대한 빈도조사를 살펴보면, 자주 있다 63%, 종종 있다 32%, 가끔 있다 4%, 거의 없다가 1%로 나타나 일본의 경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이용자의 불법주차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반행위에 관해 실시된 연구가 없다.

이와 같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위반이용 및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미이행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차별이라 함은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자의적인 기준으로 불평등하게 대우하여 그 특정개인과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열등하고 무능력하다는 낙인을 찍고, 일반사회활동에서 배제하고 격리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에서의 차별은 교통시설 제한, 편의시설 미비, 건축물 편의시설 미비, 주차제한 등을 의미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확보 및 적법한 이용 여부는 이동권 및 접근권에서 장애인 차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행위 중 위반행위에 초점을 두고 위반행위의 유형 및

실태를 분석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이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법한 이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관련 문헌 검토

2.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관련 규정

2.1.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의 단속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단속과 단속방법,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첫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반하는 단속대상은 보행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그리고 표지를 부착하였다더라도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가 해당된다.

둘째, 단속인력 및 장비확보와 관련된 사항이다. 「편의증진법」 제2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관기관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지정한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별도의 단속인력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령에 의해 기존의 주차단속공무원과 단속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 외에 시설 주나 관리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축진단 및 장애인단체, 일반시민 등을 신고 인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단속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셋째, 단속방법은 운전자가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는 운전자에게 구두로 혹은 경고장을 부착함으로써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 자동차표지'를 작성, 교부한다.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는 '과태료부과대상 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단속건별로 차적 조회를 하여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확인한다. 단속 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준용, 사진 등이나 증인을 확보할 수 있다. 편의시설 설치 시민축진단 등 민간에 의한 신고가 발생했을 때는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절차를 진행한다.

넷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과태료부과대상은 보행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다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이 해당된다. 과태료부과권자는 주차장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10만원이다.

2.1.2 장애인자동차 표지관리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의 목적은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제공, 차량10부제 적용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할인, LPG가스충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표지를 발급하는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로서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해당한다. 또는 국내거소신고한 「재외동포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그리고 장애인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성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노인복지법」 제 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가 해당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유무와 장애인 본인의 운전여부에 따라 4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하며,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여 및 리스차량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상 관련기관용 등 7종을 추가하여 발급한다. 보행 장애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37호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표준기준표'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만 이용해야 한다.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

본 연구는 문헌연구, 2011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연구의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장애인단체의 장애인차별경험 사례집 등의 관련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검토하고, 위반행위 실태조사표를 개발하였다. 조사표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위반행위분석 조사표 세부내용

조사영역	세부내용	문항수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9
보행장애인 미동반 위반		11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4
위반요일	주중, 주말	1
이용시간	주간, 야간	1
주차시설 공간특성	공간넓음, 비어있음, 무의식, 잠깐주차, 가까운 위치, 입산부 등 탑승	1
법인식 (단속기준)	단속대상 인지 과태료 부과 인지 과태료 금액 인지	3
지역		1
위반장소의 건축물 용도		1
합계		30

개발된 조사표를 토대로 하여 조사한 시설은 전국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2~4개소씩 무작위 추출하였으며, 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건축물을 용도별로 <표 2>와 같이 관공서(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상업시설(백화점, 할인마트), 고속도로휴게소, 공동주택, 의료시설, 문화·체육시설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단순무작위표본추출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50개소를 선정하였고, 장애인 당사자들을 현장방문 조사원으로 활용하였다. 위반이용자의 설문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담당공무원과 동행하여 조사를 실

시하였다. 조사원 교육을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조사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개소 당 3일간 관찰하였다.

<표 2> 조사대상시설

건축물 용도별 구분	빈도(개소)	구성비(%)
관공서	5	10.0%
백화점	6	12.0%
할인마트	9	18.0%
고속도로휴게소	15	30.0%
공동주택	3	6.0%
의료시설	4	8.0%
문화시설	4	8.0%
체육시설	4	8.0%
합계	50	1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이용자는 주차표지 미 부착 위반이용자 159명과 보행 장애인 미 동반 위반이용자 68명으로 총 227명이었다. 위반이용자의 일반현황과 위반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면접 설문조사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3.2 자료 분석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반행위 실태와 현황, 그리고 이유에 관한 분석은 빈도분석을 활용하였다.

4. 연구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반 단속대상은 보행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이용한 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주차가능표지 미 부착 위반이 159명이고 장애인 미 동반 위반이 68명으로 총 227명의 위반사태에 대해 성별, 연령, 위반 요일, 위반 시간, 위반 이유, 단속대상 및 과태료 인지 여부, 반응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4.1 주차가능표지 미 부착 위반행위자 특성

주차가능표지 미 부착으로 인한 주차 위반행위가 발생한 건수는 159건으로 위반이용행위자의 조사대상자 특성 아래의 <표 3>과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103건(64.8%), 여성 56건(35.2%)로 남성운전자의 위반사례가 많았으며, 연령대로는 30대미만 운전자가 30건(18.9%), 30~50대 미만의 운전자가 86건(54.1%), 50대 이상의 운전자가 43건(27%)으로 비교적 젊은 운전자보다는 연령이 높은 운전자의 위반 사례가 많음이 밝혀졌다.

위반 요일에 있어서는 주중 92건(57.9%), 주말 67건(42.1%)으로 주중에 더 높은 위반사례를 나타내며, 위반 시간은 주간 110건(69.2%), 야간 49건(30.8%)으로 주간시간대의 위반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차위반에 대한 이유로는 '잠깐 주차를 하려고'가 37건(23.3%)으로 가장 높았으며, '출입구가 가까이 있어서'가 36건(22.6%), '공간이 비어 있어서'가 32건(20.1%), '무의식중에'가 17건(10.7%), '공간이 넓어서'가 16건(10.1%), '모르고'가 15건(9.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과도 직결된 것으로 위반자의 대부분이 장애인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주차구역이라는 인식보다는 본인의 편리 위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차위반에 대해 단속대상 여부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넘는 97명(61%)이 알고 있었으나, 62명(39%)의 경우 단속 여부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금액에 대한 인지여부에 있어서도 과반수가 넘는 83명(52.2%)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과태료의 부과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114명(71.7%)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홍보 및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반에 대한 현장조사원의 지적에 대해 62명(39%)과 68명(42.8%)은 수용 및 반성을 하며 다른 곳으로 차량주차를 하는 한편, 29명(18.2%)은 위반 단속에 대해 비난과 분노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로 볼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위반에 따른 제재 등에 대한 인식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3>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위반 현황

구분		빈도	비율	합계
성별	남	103	64.8	159 (100%)
	여	56	35.2	
연령	30대 미만	30	18.9	159 (100%)
	30~50대 미만	86	54.1	
	50대 이상	43	27.0	
위반 요일	주중	92	57.9	159 (100%)
	주말	67	42.1	
위반 시간	주간	110	69.2	159 (100%)
	야간	49	30.8	
주차 위반 이유	공간 넓음	16	10.1	159 (100%)
	비어있음	32	20.1	
	무의식	17	10.7	
	잠깐 주차	37	23.3	
	가까운 위치	36	22.6	
	모름	15	9.4	
단속대상 인식여부	인지하고 있음	97	61.0	159 (100%)
	인지하지 못함	62	39.0	

구분		빈도	비율	합계
과태료 부과 인식여부	인지하고 있음	76	47.8	159 (100%)
	인지하지 못함	83	52.2	
과태료 금액 인식여부	인지하고 있음	45	28.3	159 (100%)
	인지하지 못함	114	71.7	
단속 적발 후 반응	수용	62	39.0	159 (100.0%)
	반성	68	42.8	
	비난/분노	29	18.2	

4.2 장애인 미 동반 위반행위자 특성

장애인자동차표시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 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위반행위자 68명에 대해서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33건(48.5%), 여성 35건(51.5%)로 여성 운전자의 위반사례가 많았으며, 연령대로는 30대미만 운전자가 20건(29.4%), 30~50대 미만의 운전자가 33건(48.5%), 50대 이상의 운전자가 15건

(22.1%)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위반 요일에 있어서는 주중 37건(54.4%), 주말 31건(45.6%)으로 비슷한 위반 사례를 보이고 있으며, 위반 시간은 주간 42건(61.8%), 야간 26건(38.2%)으로 주간시간대의 위반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차위반에 대한 이유로는 ‘공간이 비어 있어서’가 15건(22.1%), ‘무의식중예’가 15건(22.1%)로 높게 나타났고, ‘잠깐 주차를 하려고’가 12건(17.6%), ‘출입구와 가까이 있어서’가 9건(13.2%), ‘공간이 넓어서’가 8건(11.8%), ‘임산부 등이 탑승하고 있어서’가 4건(5.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주차가능 미부착 위반 사례와는 다소 다른 결과로써 장애인 미동반 위반의 경우에는 주차가능표지가 되어 있는 차량이므로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주차위반에 대해 단속대상 여부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넘는 38명(55.9%)이 알고 있었으나, 30명(44.1%)의 경우 단속 여부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인지 여부에 있어서도 37명(54.4%)이 알고 있었으나, 과태료 금액에 있어서는 45명(66.2%)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현장조사원의 단속에 대해 36명(52.9%)은 수용을 하고 20명(29.4%)은 반성을 하였으나, 12명(17.6%)은 이에 대해 비난하고 분노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과 운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직계존속인 경우가 41건(60.3%)으로 가장 높았으며, 배우자 11건(16.2%), 형제자매 등 6건(8.8%),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각 4건(5.9%), 복지단체 등이 2건(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과 운전자간의 동거 여부에 대해서는 47명(69.1%)이 동거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비 동거 7명(10.3%), 사실상 동거 2건(2.9%), 무응답 12건(17.6%)으로 30%가량이 장애인과 동거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차량에 주차가능표지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위반자의 경우에도 주차위반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과

동거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30%가 된다는 것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차량지원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4> 보행장애인 미동반 위반 현황

구분		빈도	비율	합계
성별	남자	33	48.5	68 (100%)
	여자	35	51.5	
연령	30대 미만	20	29.4	68 (100%)
	30~50대 미만	33	48.5	
	50대 이상	15	22.1	

구분		빈도	비율	합계
위반 요일	주중	37	54.4	68 (100%)
	주말	31	45.6	
위반 시간	주간	42	61.8	68 (100%)
	야간	26	38.2	
주차 위반 이유	공간 넓음	8	11.8	68 (100%)
	비어있음	15	22.1	
	무의식	15	22.1	
	잠깐 주차	12	17.6	
	가까운 위치	9	13.2	
	임산부 등 탑승	4	5.9	
기타	5	7.4		
단속대상 인식여부	인식함	38	55.9	68 (100%)
	인식못함	30	44.1	
과태료 부과 인식여부	인식함	37	54.4	68 (100%)
	인식못함	31	45.6	
단속 적발 후 반응	수용	36	52.9	68 (100%)
	반성	20	29.4	
	비난/분노	12	17.6	
보호자와 장애인의 관계	직계존속	41	60.3	68 (100%)
	직계비속	4	5.9	
	배우자	11	16.2	
	형제자매 등	6	8.8	
	직계비속의 배우자	4	5.9	
보호자와 장애인	복지단체 등	2	2.9	68 (100%)
	동거	47	69.1	
	비동거	7	10.3	
	사실상동거	2	2.9	
무응답	12	17.6		

위반행위자들의 성별 및 연령대와 주차위반행위 관련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5>

와 같다.

<표 5> 성별, 연령대와 주차위반 관련 변수 관계

	성별	연령	설치의무 인지	과태료 금액 인지여부	불법주차단속실행도
성별	1				
연령	.243 **	1			
설치의무인지	.095	.098	1		
과태료금액 인지여부	.045	.148 **	.300 **	1	
불법주차단속실행도	.060	.134 *	.117 *	.024	1

*p<.05, **p<.01, ***p<.001

주) 성별(1남, 0 여), 설치의무(1 인지, 0 미인지), 과태료금액(10만원) 인지여부(1 인지, 0 미인지)

위의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반행위자들의 성별과 연령을 고려할 때, 과태료 금액 인지, 장애인주차전용구역제도의 설치의무 인지, 그리고 불법주차단속실행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정책 제언

본 연구는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무장애공간이 되어야 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이용행위실태를 분석하였다. 특히 위반행위의 특성과 이유를 중심으로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위반의 경우 ‘잠깐 주차를 하고’, ‘출입구와 가까이 있어서’ 주차를 했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아 위반자의 대부분이 장애인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주차구역이라는 인식보다는 본인의 편리 위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 장애인 미동반 위반의 경우에는 주차가능미부착 위반과는 달리 주차가능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이므로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식으로 위반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가지 위반 사례 모두 불법주차의 단속대상 여부와 과태료부과

및 금액 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응답자가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행위 중 위반행위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들을 고려할 때, 향후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및 홍보 확대이다. 운영실태 조사와 인식조사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인식이 낮았다는 점이다. 대체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여부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무단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과 관련 단속법규 등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노력이 필요하다. 전국 단위에서 공익광고, TV 등을 통한 홍보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차별금지에 관한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위반에 따른 제재 등에 대한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위반이 장애인 차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민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식개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운영 및 관리 개선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주차 단속시 발생하는 비용·인력·민원 등의 문제, 담당부서의 의지 부족, 시설주의 비협조와 단속 후 과태료 부과문제 등 단속 과정의 문제라 할 수 있으며, 단속대상이 되는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의 장애인 탑승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이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단속권한은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 사회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단속의 실효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1조제1항을 적용하여 경찰공무원 또는 시장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 즉 전담공무원이 일괄적으로 맡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도 교통과로 이관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 판단된다.

셋째, 위반사례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관리와 관련하여 2가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하나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도하는 관리방안과 다른 하나는 위반행위 발생 후 처벌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선도적인 차원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안내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표지판의 크기, 내용, 계도문, 신고 전화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행세칙에서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때 장애인 주차구역의 바닥표시 색상이나 방법 등을 추가함으로써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등록 장애인 모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야 하는 것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위반행위 발생 시 처벌 등에 관한 규정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법률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 나타난 바와 같이 장애인과 동거하지 않는 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이용하는 것을 볼 때,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을 통해 함께 동거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의 증명사진을 부착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할 때 자동차에 발급하는 현행시스템을 개선하여 주차가능한 사람에게 표지를 발급하는 방안 등도 제시할 수 있다. 현재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복지법과 편의증진법에서 동일한 명칭으로 사용되고는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어 혼란함이 있다. 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로서 주·정차 위반 시 계도위주 단속의 원활화를 위함이고,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의 편의증진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표지

라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장애인차량을 “주차가능”, “주차불가” 등으로 다시 구분 짓게 됨에 따라 이를 하나로 통일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주차불가” 구분을 삭제되 통행료·주차요금 등의 할인을 위한 확인방법은 장애인복지카드로 적용하고, “주차가능”표지를 실제 보행장애인에게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장애인의 접근권을 제한하는 차별금지 정책들을 제안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사회참여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함의가 있다.

향후에는 후속과제로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 이용행위, 특히 위반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규명할 수 있는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김용득·김미옥(1995)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의 이해.
- [2] 박신일(2001) 장애인편의시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보건복지(2010) 2010년도 장애인 복지사업안내.
- [4] 사이버경찰청통계자료실.
<http://www.police.go.kr>
- [5] 조홍중·방그레(2008)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본 장애인주차공간의 이용방안. 한국특수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6] 徳田克己(2001) 車いす使用者の交通安全ニーズに關する 研究報告書. 財団法人 國際交通安全學會.
- [7] 노종채(2009) 장애인주차공간의 관련법규와 이용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8] 박종석(2003) 특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한국장애인개발원(2009) 200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 [10] 염형국(2009) 한국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경과와 의의.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양 숙 미

1991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1994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2000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2000~현재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실천, 장애인복지
E-Mail: smyangc@nsu.ac.kr



김 만 기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졸업(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정치학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정치학박사)
남서울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한국PR학회 회장
스마트융합전국학술연합 공동대표
미래정책포럼 의장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부회장
바른사회·밝은정치·시민연합 공동대표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부회장
한국방송비평회 총무이사
관심분야: 정치커뮤니케이션, 이미지와 명성,
광고PR 효과평가, 광고홍보캠페인,
문화연구

E-mail: kapr@hanmail.net